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리권한 강화〉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57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총괄	3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3
나. 지급결제제도의 개요	5
다.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과거 국회 논의 경과	9
라.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검토	10
1) 총괄	10
2) 관계 기관 의견	12

2. 조문별 검토	14
가.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운영기준 제정권 및 시정요구권 (안 제81조제1항 및 제2항)	14
나. 자료제출 요구권 확대 및 구속력 부여(안 제81조제3항)	19
다. 검사·공동검사 및 서면조사·현장조사 근거 마련 (안 제81조제4항 및 제5항)	2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차규근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12. 31.

다. 회 부 일 : 2025. 1. 2.

II. 제안이유

지급결제제도는 실물 및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해 종료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총칭하는 것으로, 각종 결제자금의 통로 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의 중요 하부구조임.

그런데 정보기술 발달과 금융서비스 현대화 등으로 전통적인 지급수단 외에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확대,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의 등장 등 지급결제제도가 복잡해지고, 은행권에서 전담하던 지급결제서비스를 비은행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모바일 지급수단으로 대표되는 통신산업분야, 유통산업분야 등 비금융기관도 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급결제제도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이에 지급결제제도 감시기관인 한국은행의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1항).

나. 한국은행 외에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가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은행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2항).

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에 참가하는 기관에 대하여도 지급결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3항).

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독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장 확인을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4항).

IV. 검토의견

1. 총괄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리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① 금융통화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②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 제정권을 현행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인 거액결제시스템에 한정하던 것을 금융결제원 등 민간 지급결제시스템까지 확대하고, ③ 민간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해 현행 운영기준 개선 요청권만 부여하던 것을 시정요구권까지 부여하려는 것임. 또한, ④ 지급결제제도 관련 자료요구대상을 현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한국은행 운영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서 민간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까지 확대하고, 자료요구의 구속력을 부여하며, ⑤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금통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단독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과 개정안의 지급결제 관련 한국은행의 권한 비교 >

구분	현행	개정안
지급결제제도 운영기준 제정권	한은 거액결제시스템에 한정	<u>지급결제제도 전반</u> 으로 확대 (안 제81조제1항)
민간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권한	운영기준 <u>개선요청권</u> (구속력 X)	운영기준 <u>시정요구권</u> (구속력 O) (안 제81조제2항)
지급결제 관련 자료제출 요구 대상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구속력 O)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구속력 O)
	<u>한은 운영</u>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구속력 X)	<u>모든</u>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구속력 O) (안 제81조제3항)
금융기관등에 대한 검사·공동검사 요구	- 검사요구 사유 :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대상기관 : 금융기관	- 검사 및 공동검사요구 사유 : 통화신용정책 수행 및 <u>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u>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대상기관 : <u>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모든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u>(안 제81조제4항)
단독 검사 (한은 단독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	- 단독 검사 사유 : 금통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대상기관 : <u>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모든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u>(안 제81조제4항 및 제5항)

나. 지급결제제도의 개요

지급결제란 실물 또는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해 해소하는 절차를 말함. 예를 들면, 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 인터넷 뱅킹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것, 매달 금융기관의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 등이 해당됨.

현금 외의 지급수단인 어음·수표·신용카드·계좌이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결제는 지급, 청산 및 결제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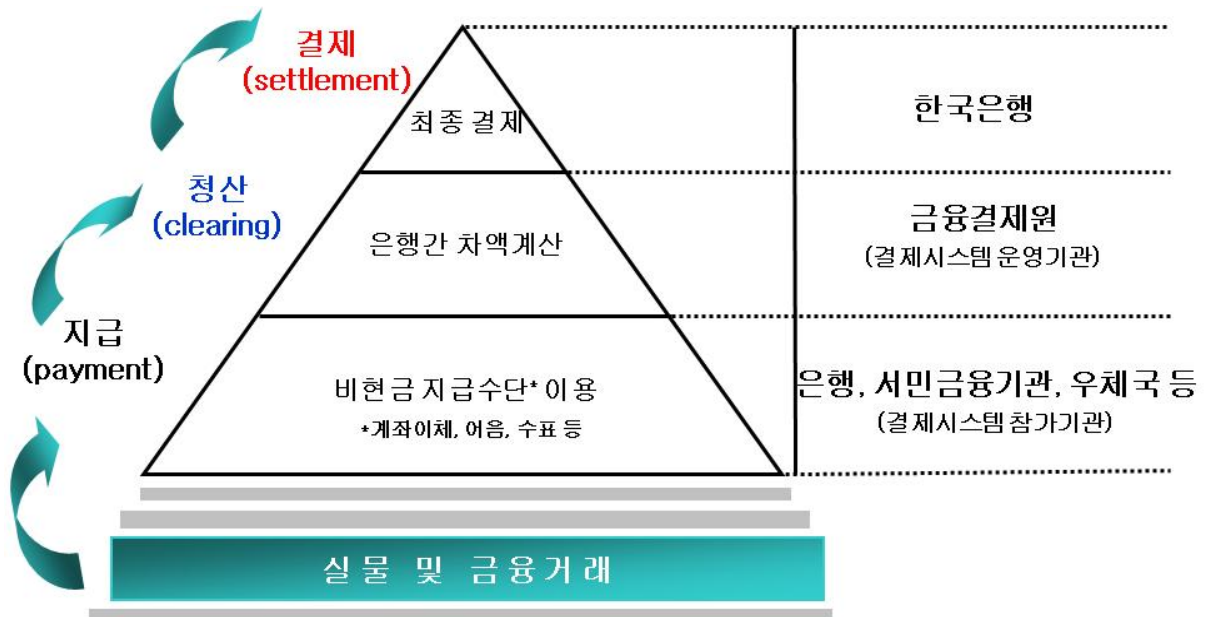
지급(payment)은 지급인이 채무의 변제를 위해 수취인에게 예금 등 화폐적인 청구권(monetary claim)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함.

청산(clearing)은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 청산기관(clearing house)이 거래기관 사이에 개입하여 결제를 위해 송부된 어음, 수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해야 할 차액을 산출하는 과정임.

결제(settlement)는 청산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결제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 간의 자금이체 등을 통하여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실제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함.

1)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급수단으로서 공신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으므로 어떤 거래에 서나 현금을 지급하면 더 이상의 결제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지급결제가 마무리 됨.

< 자금결제과정에서의 지급·청산·결제 프로세스 >



자료 : 한국은행

이와 같은 지급결제의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으로서 중앙은행 당좌예금을 최종 결제자산으로 이용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참가기관의 결제실패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우려(시스템리스크)가 있는 경우 화폐의 독점적 발행기관 및 최종대부자로서 해당 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여 시스템 전반의 위기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은 크게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및 외환결제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음.

거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등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서, 건당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건수는 많지 않은 거액 소량 결제시스

템임.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 이하 한은금융망)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한은금융망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대다수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음. 참가기관들은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 간 자금이체를 통하여 한국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과 주고받을 자금을 결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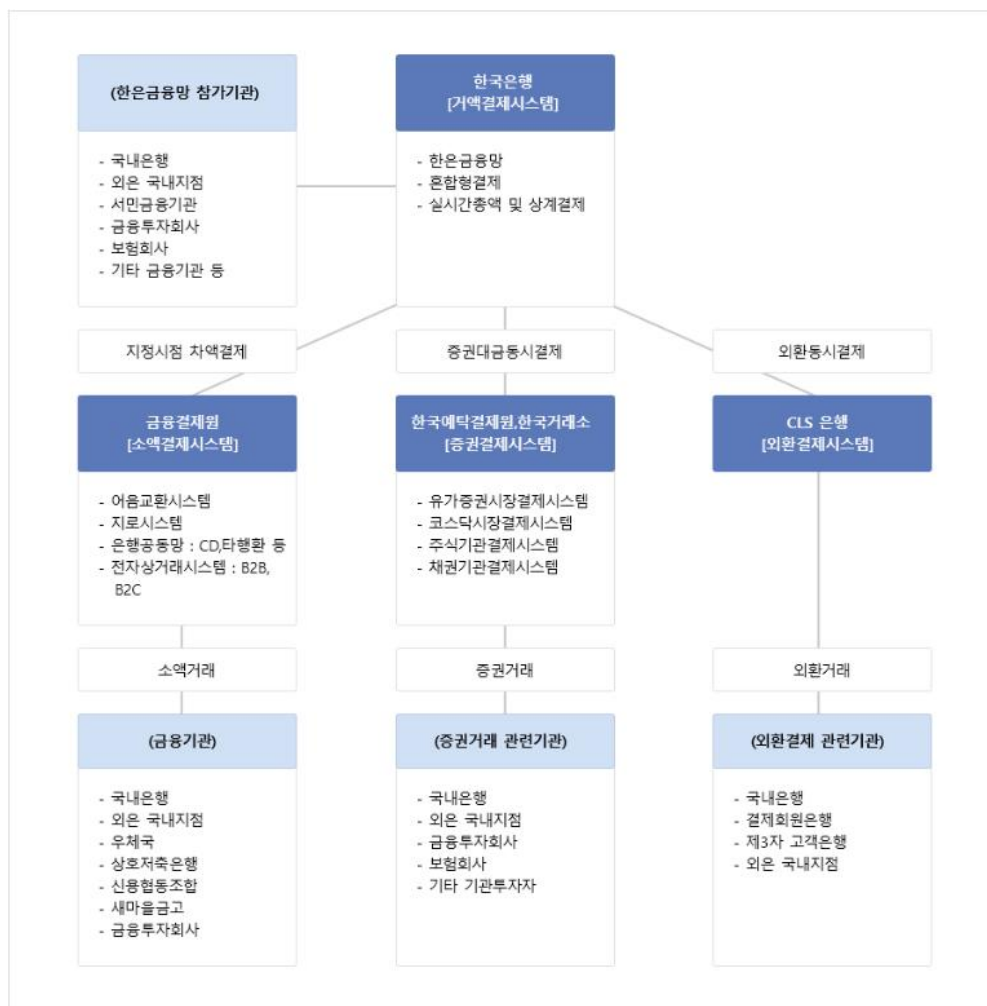
소액결제시스템은 주로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고객을 상대로 한 거래를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건당 거래금액은 크지 않으나 거래건수가 많은 소액 대량 결제시스템으로, 대부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어음교환시스템·지로시스템·금융공동망 등이 이에 해당함.

증권결제시스템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 팔 때 그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지급결제시스템임. 증권결제시스템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 코스닥 및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채권기관투자자, 주식기관투자자 및 기관간 RP 결제시스템 등이 해당함.

외환결제시스템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매도기관과 매입기관간에 사고 판 통화를 서로 교환·지급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지급결제시스템임. 일반적으로 외환결제는 환거래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역간 영업시간이 달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음²⁾으로 인해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을 통해 외화를 동시에 결제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 2002년 9월 구축되어 가동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에 동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임.

<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개요 >



자료 :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2) 즉,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은 지역간 영업시간이 달라 매입통화와 매도통화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은행이 매도통화를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는 경우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다. 지급결제제도와 관련된 과거 국회 논의 경과

본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하게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리권한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제18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음.

제18대 국회에서는 박영선의원·김성식의원·강운태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되었음. 동 개정안은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 운영기준 제정권 및 시정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리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였음.

개정안에 대하여 당시 정부는 금융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 및 금융기관들의 업무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자는 주장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제19대 국회에서는 박원석의원이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제20대 국회에서는 송영길의원이, 제21대에서는 양경숙의원·김주영의원이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으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임기만료폐기 되었음.

라. 개정안의 개정 필요성 검토

1) 총괄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은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 발전에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즉,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통한 자금 거래나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한 것은 지급결제제도를 통해 자금이 이전된다는 신용이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새로운 금융수단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임.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리스크³⁾의 증가도 초래한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간, 금융기관간, 금융시장인프라간 상호연계성 및 상호의존성이 높아짐으로 특정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급속히 파급되어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음.⁴⁾

이와 같은 결제리스크의 강력한 관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한국은행에 민간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3) 결제리스크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을 의미함.

4) 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2014.

과 운영기준 개선요청권 등 낮은 수준의 관리권한만을 부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지급결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13년 IMF 및 세계은행(WB)은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⁵⁾ 결과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융시장인프라(지급결제시스템 및 운영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권한은 충분하나, 한국은행의 권한은 효과적이지 않아 이행강제력 강화, 정보수집권한 강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음.

그럼에도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한국은행법」 제81조의 규정은 2003년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의 권고사항에 따라 현행과 같이 개정⁶⁾된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련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5)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 금융부문의 안정성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위기대응력 제고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인 1999년 도입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2008)를 계기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29개 국가(한국,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 대한 피평가 의무가 2010년부터 신설되었음. 우리나라는 1차 평가(2003년), 2차 평가(2013년)를 거쳐 최근(2020년) 3차 평가가 완료되어 결과보고서가 발표되었음.

6) 기존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업무에 관하여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과 직결되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한국은행의 권한을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사항에 따라 2003년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2) 관계 기관 의견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기획재정부는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 범위 확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체계와 충돌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과 통화정책을 분리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와 불합치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국은행의 의견으로는,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의 최종적인 완결 책임이 있는데 현재 한국은행에는 민간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운영기준개선요청권만 부여되어 있을 뿐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민간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의 정보를 직접 입수할 수 없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한국은행의 검사·공동검사 요구 대상기관이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당폭 확대되므로 지급결제제도 감시 목적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대상기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첫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수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국내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한국은행 조직을 규율하는 「한국은행법」에 규정하는 것은 규율범위를 이탈한 것이며, 한국은행이 제3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제정하고, 처분성을 갖는 시정요구가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은 헌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둘째, 개정안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기준’ 제정권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금융위원회의 거래소, 예탁결제원에 대한 업무규정 승인권⁷⁾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같은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예탁결제원에 감독권⁸⁾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거래소, 예탁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보고) ① 예탁결제원은 제296조제1항제5호의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 제302조의 예탁업무규정 및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① 거래소는 회원관리규정·증권시장업무규정·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6조(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10조(보고와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참고가 될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419조제9항은 거래소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①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결제원에 대한 한국은행의 시정요구권 및 이행의무 부과는 중복검사, 감독체계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2. 조문별 검토

가.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운영기준 제정권 및 시정요구권 (안 제81조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 지급결제제도 운영기준 제정 범위 -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 지급결제제도 운영기준 개선 관련 권한 - 해당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 - (신 설)	○ 지급결제제도 운영기준 제정 범위 -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 <u>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u> ○ 지급결제제도 운영기준 개선 관련 권한 - 해당 운영기관에 대하여 운영기준에 준수하는 등 <u>시정 요구</u> - <u>요구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u>

현행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해서만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이러한 한국은행의 개선 요청은 권고 사항에 그치는 것으로 해당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게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하는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음.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81조제1항), 해당 운영기관(이하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이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관은 이를 따르도록 구속력을 부여하여(안 제81조제2항)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기준 관련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선,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개정안이 현행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충돌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현행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2조제3항제13호⁹⁾는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시스템 운영기관인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사항¹⁰⁾이라는 점, 같은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예탁결제원에 감독권¹¹⁾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

9)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금융정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

14. ~ 42. (생략)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보고) ① 예탁결제원은 제296조제1항제5호의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 제302조의 예탁업무규정 및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① 거래소는 회원관리규정·증권시장업무규정·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6조(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10조(보고와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참고가 될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여 볼 때, 개정안이 한국은행에 부여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전반에 대한 지급결제제도 운영기준 제정권 및 해당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권은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중첩될 수 있음.

반면,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감독’ 역할 수행을 위한 권한으로서,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감시(oversight)’기능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임.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감독’의 주된 목표는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상태이나, 한국은행 ‘감시’의 목표는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있으며, 금융기관 ‘감독’이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 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은행의 ‘감시’는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 등이 시스템적 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된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임.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한국은행에 대한 권한 부여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보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419조제9항은 거래소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①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 거시적인 한국은행의 감시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하여 수행하고 있는 감독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지급결제제도 감시와 금융기관 감독과의 차이점 >

구 분	지급결제제도 감시	금융기관 감독
정책목표	•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통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도모	•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통한 신용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
감시·감독 대상	• 지급결제시스템과 그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	•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신용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
감시·감독 내용	• 지급결제시스템 모니터링 • 지급결제통계 수집 및 분석 •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평가와 필요시 시스템 개선 권고	• 금융기관 인·허가 •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감독 및 검사 • 지급수단의 취급조건, 수수료 등 규제 • 금융사고 방지 및 제재 • 소비자 보호
제재내용	•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참가제한, 개선권고, 부정적 의견 공표	• 금융기관 영업제한 및 관련 임직원 문책요구 • 금융기관 인·허가 취소 등
근거법률	• 한국은행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국제기준	• 국제결제은행(BIS) CPMI(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IOSCO(국제증권감독기구)의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s)’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준칙’
업무수행 방식	• 지급결제제도 리스크관리기준 제정, 운영기관과의 협의 등	• 감독규정 제정, 검사, 제재 등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2014.

또한, 지급결제업무는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업무로서,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중앙은행이 종합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한국은행 권한으로는 지급결제제도의 전반에 대한 총괄·감시 기능 수행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2013년 금융부분평가프로그램(FSAP)에서 IMF와 세계은행(WB)으로부터 한국은행의 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이행강제력 강화를 권고받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지급·청산·결제 감독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을 통해 연준에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규정 승인 및 조사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있고, 영국은 「은행법(Banking Act)」을 통해 영란은행에 중요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운영기준 및 업무규범 제정권, 운영규정, 개정요청권 및 승인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 외에도 호주,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준을 승인·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스위스, 스웨덴, 일본의 경우 중앙은행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¹²⁾

12) <참고자료>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권한’ 참조

나. 자료제출 요구권 확대 및 구속력 부여(안 제81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 지급결제 관련 자료 요구 대상 -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구속력 ○) -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구속력 X) - <u>(신 설)</u>	○ 지급결제 관련 자료 요구 대상 -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구속력 ○) -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구속력 ○) - <u>모든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u> (구속력 ○)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자료 요구 대상을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과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은행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 중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의 경우 현행법에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자료요구의 구속력이 있는 반면, 참가기관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한국은행 자료요구의 구속력이 없다는 차이가 있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 대상을 한국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결제원 등이 운영하는 모든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까지 확대하고, 참가기관에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여 자료요구의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파업, 전산장애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및 감독당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입수하여야 할 뿐 한국은행이 직접 요구할 수 없어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한국은행의 자료요구 대상기관을 확대할 경우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결제리스크 발생 시 한국은행이 적시에 자료를 획득하여 즉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대상이 크게 증가하게 되며 자료요구의 구속력도 부여되는 바, 현행법상 한국은행의 자료요구를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참가기관 등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없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인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135개사로, 국내은행 20개사, 외은지점 31개사, 증권 41개사, 보험 19개사, 서민금융기관 중앙회¹³⁾ 5개사 및 기타¹⁴⁾ 12개사로 구성되어 있음.

13) 농협, 신한,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

14) 우정사업본부, 예금보험공사, 외국환중개사 등

개정안과 같이 모든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하여 한국은행에 자료요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2024년 말 기준으로 자료요구 대상인 참가기관 수가 현행 135개사에서 4,687개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지급결제제도별 참가기관 현황(2024년말 기준) >

운영기관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수
한국은행	한은금융망(1개)	135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지로시스템, CD공동망, CMS공동망, B2C전자상거래공동망, B2B전자생거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국가간 공동망 및 오픈뱅킹 공동망(12개)	8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및 파생상품결제시스템(3개)	93
한국예탁결제원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기관간Repo결제시스템 및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3개)	741
서민금융기관 중앙회	각 서민금융기관 중앙회 지급결제시스템(6개)	3,571
시중은행	각 시중은행 외화자금이체시스템(4개)	421
교통은행 서울지점	위안화 청산 시스템(1개)	58
BC카드	BC카드결제시스템(1개)	46
계(21개)		4,687

주1. 한국은행 감시 대상 지급결제제도 기준

주2. 외국 중앙은행들과 협조감시중인 CLS은행의 CLS시스템 제외

자료: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요구의 경우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은 것과 달리 모든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요구에도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한 바 이러한 규정이 참가기관 등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 「한국은행법」 제87조¹⁵⁾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통화 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음.

둘째, 현행 체계 하에서도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¹⁶⁾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¹⁷⁾는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15) 「한국은행법」 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2.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7)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로도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한은금융망에 참가하지 않는 기관의 상당수에 대한 자료 요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다. 검사·공동검사 및 서면조사·현장조사 근거 마련 (안 제81조제4항 및 제5항)

현 행	개 정 안
○ 금융통화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1호부터 11호 - <u>(신 설)</u> - 12호부터 20호 ○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공동검사 요구권 - 목적 : 통화신용정책 수행 - 검사대상 : 금융기관 <u>< 신 설 ></u>	○ 금융통화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현행과 같음) - <u>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u> - (현행과 같음) ○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공동검사 요구권 - 목적 : 통화신용정책 수행 - 검사대상 : 금융기관 ○ <u>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공동검사 요구권</u> - 목적 :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 - 검사대상 :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 ○ <u>한국은행 단독 서면조사 또는 현장 조사</u> - 목적 :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 - 검사대상 :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현행법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은행,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한국은행 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이는 한국은행이 원활한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

한 목적임.

개정안은 이러한 권한에 더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를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명시하고,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및 모든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을 검사요구 대상 기관에 포함하며,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단독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와 관련된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권을 신설하고,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은행이 맡고 있는 지급결제제도 감시·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특히,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 ↔ 다른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 다른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으로 금융망이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의 결제리스크 상황이 연쇄적으로 다른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및 다른 지급결제시스템에까지 결제리스크를 발생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의 검사 요구권 및 단독 조사

권을 신설하는 등 한국은행의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지급결제제도 안정을 위한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검사·공동검사 요구권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해서까지 검사·공동검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검사 대상 기관이 크게 확대되어 이들 기관의 업무부담 가중 및 중복검사로 인한 비효율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특히,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¹⁸⁾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¹⁹⁾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업자,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공동검사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외의 대상에까지 추가적인 검사·공동검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③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19)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화폐발행자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은행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서면조사나 현장조사의 경우 행정조사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행이 행정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개정안에서 규정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는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조사·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 ‘행정조사’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에게 침익적 행위임을 고려하여 「행정조사기본법」²⁰⁾에 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행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그 점검·조사의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범위 확대를 통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지급결제제도 운영·참가기관에 대한 검사·공동검사 요구권과 한국은행 단독 조사권(서면·현장) 신설로 인한 수검기관의 업무부담 및 비효율 발

20)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생 우려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비교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11. (생략) <u><신설></u> 12. ~ 20. (생략)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 ----- ----- -. 1.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서면 조사 또는 현장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12. ~ 20. (현행과 같음)
제81조(지급결제업무) 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u>한국은행이</u>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1조(지급결제업무) ① ----- ----- -----한국은행과 한국은행 외의 자가----- -----사항(이하 이 조 에서 “운영기준”이라 한다)----- -----.
② 한국은행은 <u>한국은행 외의 자가</u>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u>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u>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외의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이하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이라 한다)가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③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	③ -----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과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 -----, ----- -----. ④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과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한 검사 또는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의 요구 방법 및 절차는 제88조를 준용한다.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① ----- ----- -----금융감독원에----- ----- ----- ----- ----- ----- -----, -----

현행	개정안
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7

참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권한

권한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EU	홍콩	스위스	스웨덴	일본	한국
운영기준 승인·제정	○	○	○	○	X	○	X	X	X	X
제재	○	○	○	○	○	○	○	X	X	X
시정 조치	○	○	○	○	○	○	○	X	X	X
자료제출 요구	○	○	○	○	○	○	○	○	○	○
개선 요청	○	○	○	○	○	○	○	○	○	○
직접 조사	○	○	X	○	X	○	○	X	○	X

주: EU의 경우 결제시스템 감독은 ECB 또는 EU 회원국 중앙은행이 담당하나 증권 및 파생금융상품 관련 지급결제시스템의 감독기관은 EU 회원국별로 상이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과 지급결제제도』, 2024